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1

발의연월일: 2024. 6. 10.

발 의 자:최민희·윤건영·박은정

한병도 • 김 현 • 정을호

허 영·전현희·김원이

강득구 · 허종식 · 이해민

조인철 · 이학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방송문화진흥회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 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 는 경우가 적지 않고,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 인 방송사업자(이하 "문화방송"이라고 함)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 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,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,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,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

조, 제9조, 제10조 및 제10조의3)

법률 제 호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"9명"을 "15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가"를 "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
-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특정 성(性)을 1명 이상 추천하여야 하고,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- 2.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, 활동내용,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5명(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한다). 이 경우특정 성(性)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3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(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도 포함한다)가 추천하는 사람 2명. 이 경우 특정 성(性)이 1명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4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여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.
-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, 공모·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
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0조제10호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규정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.

제10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제10조의3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진흥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0조의3(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) ① 진흥회에 진흥회가 최다출 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(이하 "사 장후보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진흥회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사장후보추천위 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,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.
 - ④ 진흥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.
 -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, 면접,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진흥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 - ⑥ 진흥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사 및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진흥회의 이사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이 법에 따라 진흥회가 구성되고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 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임원) ① 진흥회에는 임원	제6조(임원) ①
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<u>9명</u>	<u>15명</u>
의 이사와 감사(監事) 1명을 두	
며,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	
다. 다만, 보궐임원의 임기는	
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	
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	4
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	
고려하여 <u>방송통신위원회가</u> 임	<u>다음 각 호에 따라</u>
명한다.	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
	<u>가</u>
<u><신 설></u>	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
	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
	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
	특정 성(性)을 1명 이상 추천
	하여야 하고, 국회 소관 상임
	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<u><신 설></u>	2.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,
	활동내용, 회원 수를 기준으
	로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
	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하여 추천하는 사람 5명(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한다). 이 경우 특정 성(性)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

- 3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(진흥 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 자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 자의 시청자위원회도 포함한 다)가 추천하는 사람 2명. 이 경우 특정 성(性)이 1명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 사업자의 임직원이 자신의 대 표성을 위임하여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 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 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.

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며, 공모·의견수렴 등의 과 정을 거쳐야 한다.

⑤ · ⑥ (생 략)

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~ ③ | 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~ ③ (생 략)

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· ④ ------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⑤ • ⑥ (생 략)

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제10조(이사회의 기능) -----

⑥·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)

(현행과 같음)

----.. 다만. 제 10조제10호에 따른 방송문화진 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 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규정된 사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 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.

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 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.

⑥·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)
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• 의 결한다.

1. ~ 10. (생략) <신 설>

11. (생략)

제10조의2(진흥회가 최다출자자 제10조의2(진흥회가 최다출자자 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) ①·②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1. ~ 10. (현행과 같음) 10의2. 제10조의3의 사장후보추 천위원회 구성과 운영

11. (현행과 같음)

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진흥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 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 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3(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) ① 진흥회에 진흥회 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추천위 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 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진흥회와 진흥회가 최다출 자자인 방송사업자는 사장후보

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,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한 다.

- ④ 진흥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 회가 제2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.
-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, 면접,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진흥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- ⑥ 진흥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 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 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